

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상급단체 등 전체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- 10.5.(목) 한겨레신문(인터넷), “양대노총 공시 거부 땀 조합원 세액공제 안돼...‘연좌제’ 비판” 등

2. 설명 내용

-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여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는 경우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
 - *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여타 기부금단체(공익법인 등)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계 공시
-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과 세제혜택을 공유하므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과 세금 납부 주체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급단체도 함께 회계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
 - 나아가, 상급단체와 소속 노동조합이 협력하여 투명하게 회계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
- 따라서 동 제도를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 연대적으로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연좌제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음

담당 부서	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	책임자	과 장	조충현 (044-202-7692)
		담당자	서기관	박보현 (044-202-7695)